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043
----------	------

2022년 2월 14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자 : 박기열 의원 (찬성자 29명)
- 나. 제 안 일 : 2022년 1월 21일
- 다. 회 부 일 : 2022년 1월 25일
- 라. 상 정 일 :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2022년 2월 14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기열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‘가출청소년’은 흔히, 비행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상위법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‘가정 밖 청소년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조례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별표 1 제2호의 기능란 중 “가출청소년”을 “가정 밖 청소년”으로 변경 함(별표 1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(2022.1.27. ~ 2.8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태한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별표 중 ‘가출 청소년’을 ‘가정 밖 청소년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〈 신·구 조문대비표 〉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1]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(제4조 관련)				[별표 1]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(제4조 관련)			
구분	자치구	시 설 명	기 능	구분	자치구	시 설 명	기 능
2. 청소년 복지 시설	금천구	시립금천청소년상담센터	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	2. 청소년 복지 시설	금천구	시립금천청소년상담센터	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
	강북구	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	위기가출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		강북구	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	위기가정 밖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

- 위기 청소년에 대한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, 청소년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‘가출청소년’이라는 표현을 ‘가정 밖 청소년’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권고(2017.1.2.)하였고,
 - 이에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(2021.9.24.)에 따라 서울시도 지난 제301회 정례회(2021.6.)에서 본 조례 본문 중 ‘가출청소년’을 ‘가정 밖 청소년’으로 개정했으며,
 - 본 개정안은 별표1의 시립청소년시설의 기능 설명란에 표기되어 있던 ‘가출’이라는 표현을 ‘가정 밖’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- 본 개정안은 개선된 표현(가출청소년 → 가정 밖 청소년)을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 법령과 조례 사이에 용어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,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가출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 별표1 중 ‘청소년시설 기능’의 설명란에 ‘가출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시설은 모두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(9개소)와 자립지원관(1개소),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,
 -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경우, 여러 유형의 위기청소년(가정 밖 청소년, 학업중단, 학교폭력·집단따돌림 피해청소년, 일탈행동, 자살위험, 비행, 사이버·게임·도박·약물 중독, 은둔 청소년 등) 중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, 기능설명에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,

[별표1]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(제4조 관련)

구분	자치구	시 설 명	기 능	위 치
1. 청소년활동시설	① 청소년수련관 (시설명 생략)			
	② 청소년특화시설 (시설명 생략)			
	③ 유스호스텔 (시설명 생략)			
2. 청소년복지시설	금천구	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	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	봉은사로 114길 43
	"	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(여)	"	독산로 73길 10-16
	관악구	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	"	신림로 376
	"	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	"	난곡로24가길 54
	중랑구	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(여)	"	송림길 156
	용산구	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	"	만리재로 156-1
	(이동)	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/서남)	"	강북지역(이동형차량)
	(이동)	시립청소년이동쉼터(동북/동남)	"	강남지역(이동형차량)
	은평구	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(여)	"	통일로 92길 37-6
	도봉구	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	"	도당로 17길34 외
	강북구	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	위기(가출)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	한천로 140길 5-24
	중구	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	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	을지로11길 23
3. 기타청소년시설	(생략)			

- 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상담, 자립 지원, 문화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, 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기능을 모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‘위기 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’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-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별표의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법령과 용어 일치를 통해 조문의 명료성을 확보하고,
 -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위기청소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로 변경하여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,
 - 가정 밖 청소년을 기피할 대상이 아닌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4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영, 김기대, 김정태, 김정환,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 신정호, 양민규, 이광호, 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 장상기, 최웅식, 최정순, 한기영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9명)

1. 제안이유

- ‘가출청소년’은 흔히, 비행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상위법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서 ‘가정 밖 청소년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조례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별표 1 제2호의 기능란 중 “가출청소년”을 “가정 밖 청소년”으로 변경 함. (별표 1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의 기능란 중 “가출청소년”과 “(가출)청소년”을 각각 “가정 밖 청소년”과 “(가정 밖)청소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1]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(제4조 관련)				[별표 1]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(제4조 관련)			
구분	자치구	시 설 명	기 능	구분	자치구	시 설 명	기 능
2. 청소년 복지 시설	금천구	시립금천청소년상담센터	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	2. 청소년 복지 시설	금천구	시립금천청소년상담센터	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
	강북구	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	위기(가출)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		강북구	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	위기(가정 밖)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